



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669호 2010. 11. 25.(목)

공 고	
-----	--

○ 공고 제2010-820호 [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].....2

【 안 내 문 】

-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
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입립마당 → 북구 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: 문화홍보과 (☎ 219-7207 행정 7207)

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

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0. 12.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『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』에 따라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 지정계획 공고를 하였으나 제안서가 단독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2010년 11월 25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지정방법 : 경쟁방법

2. 금 고 수 : 1개 금고

3. 약정기간 : 3년 (2011. 1. 1 ~ 2013. 12. 31)

4. 신청자격

- 은행법(제2조·제5조)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중 우리구 관내 영업점 (지점, 출장소)을 둔 금융기관

5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-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(34%)
-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(19%)
-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(19%)
- 금고업무 관리 능력 (18%)
-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(10%)

[별표 1] 평가항목 배점 기준표 : 붙임

6. 신청 절차

가. 관련서류 열람 및 접수

- 열람기간 : 2010. 11. 25 ~ 11. 29 (5일간)
- 접수기한 : 2010. 11. 29 (월) 18:00한
- 접수장소 : 세무과 (1층 민원실)
- 제출부수 : 12부 (원본 1, 사본 11)
- 제출서류 : 구 금고지정신청서 및 지정신청안내서에 의한 지정서류
- 제출방법 :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함

7. 심사 방법

- 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의한 심의표 작성
- 서류심사 (단,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)
 - ※ 면접심사에 응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임
- 금고별 평가결과에 따라 1순위를 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정함

8. 금고의 주요 업무

-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-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
- 구 소유 현금과 유가증권(수입증지 등)의 출납 및 보관
-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
9. 기타

- 신청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

